

'18년도 중량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

변경과업지시서

2018. 12

소 속 디자인경영단 패션문화본부
 패션산업팀 오진실

전 화 02-2096-0154

이메일 ohoh0513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'18년도 중량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 변경 과업지시서

I 과업개요

가. 사업명 : '18년도 중량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

나. 사업대상 : 의류제조사업 종사자

다. 사업지역 : 동북권 전역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

라. 사업기간 :

1. 기존 사업 기간 : 2018년 3월 30일 ~ 2018년 12월 31일

2. 변경 사업 기간 : 2018년 3월 30일 ~ 2019년 3월 31일

마. 센터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08 이안빌딩 9층

바. 사업예산 :

1. 기존 계약 금액 : 807,000천원(VAT포함)

2. 변경 계약 금액 : 886,200천원(VAT포함)

사. 입찰방법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아. 사업목적 : 의류제조 업체에 대한 다각적이고 효율적 지원으로 신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기반 산업 육성에 기여

자. 변경내용 : **지속적인 동북권 지역 봉제업체 지원을 위해 중량패션지원센터 차후연도 운영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과업기간 연장**

II 과업내용

가. 의류제조공장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

- 사업대상 : 동북권 전역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
- 사업기간 : 2018년 6월 ~12월
- 사업목적 : 의류제조공장의 공장 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의욕고취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
- 사업예산 : 350,000천원
- 지원내용 : 공장환경개선(조명기구교체, 노후보일러 교체, 전기 시설 교체, 환풍 시설 등)
- 지원규모 : 1개 업체 최대 300만원 지원(추후 변동 가능 사항 임)

나. 의류제조공장 장비 임대 지원 사업

- 사업대상 : 동북권 전역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
- 사업기간 : 2018년 4월 ~12월

- 사업목적 : 의류제조공장의 특수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
- 사업예산 : 47,520천원
- 지원내용 : 봉제 장비 임대 비용 지원
- 지원규모 : 1개 업체 최대 120만원 지원(추후 변동 가능 사항 임)
- 지원 업체수 계획(안) :
 - 작업환경개선 예산 산출내역 : 300만원(지원금) + 50만원(검수비용 및 부가세) = 350만원
 - 장비임대지원 예산 산출내역 : 120만원(지원금) + 12만원(부가세) = 132만원

관할구	업체수 현황	비율	작업환경	장비임대
중랑구	1607	36%	29	9
성북구	1313	30%	24	7
강북구	800	18%	14	5
도봉구	494	11%	9	3
노원구	211	5%	4	1
광진구	665		20	11
합계	4,425	100%	100	36
예산 소계			350,000,000	47,520,000
예산 합계			397,520,000	

- ※지원 업체수 계획(안)은 추후 변동 가능한 사항임
- ※업체수 현황은 2017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사항임
- ※광진구는 특별관리 예산 배정으로 업체수 비율 미포함 사항임

다. 센터관리 및 기타 지원 사업

- 사업대상 : 동북권 전역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
- 사업기간 : 2018년 4월 ~ 2019년 3월 말(해당 사업비 소진시 까지)
- 사업목적 : 거점별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봉제공장 산업 활성화 기여
- 센터관리예산 : 70,484천원 → 72,035천원(증액)

※ 공과금 및 인건비를 제외한 센터 및 기타 운영비 예산임.

- 지원내용 :
 - 지역 구청 및 지역 협의체 연계 홍보 활동 강화
 - 유관기업 및 관공서에 센터 안내자료 비치
 - 지역협의체, 협동조합 센터 안내자료 배포
 - 재단실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재단품목에 스티커 부착하여 센터 홍보 예정
 - 재단실 운영지원 : 의류 제조 관련 특성화
 - 대상 : 불특정 다수 봉제공장
 - 장비 : CAD/ CAM 장비(프랑스 렉트라 사(社))
 - 인력 : 3명(성수기 일용직을 고용하여 활용)
 - 비용 : 실비로 지원
 - 내용 :
 - 아웃도어 및 기능성, 특수복 전문 재단실 역량 강화

전문 재단실 이미지 구축으로 센터 이미지 각인효과
특수봉제장비 교육을 활용하여 이용객 모집

- 기타 지원사항
 - 도시형 소공인 금융자문 사업 홍보 및 안내
 - 새터민, 다문화, 저소득, 기초수급 가정의 인력에 대한 우선 취업안내 지원
 - On-Off Line을 통한 구인·구직 연결지원

라. 사업 관리 및 요구사항

- 착수보고, 중간보고 실시 및 자료 제출
-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보고 및 현황보고 실시
- 센터 운영 프로그램 기획사항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서울디자인 재단과 협의 후 과업 수행

마. 정산 및 산출물, 결과보고서 제출

- 월례보고(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) 월 1회
- 계약금 내에서 원가 정산 기관에 의뢰 사후 정산
- 행사종료에 따른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 및 정산내역서 (공인회계사 검수 필), 외부전문기관이 실시한 평가보고서 제출
- 최종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일 30일전까지 제출

Ⅲ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

가. 사업수행 지침

1. 과업 준수사항

※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“발주기관”으로, 과업 수행자는 “계약상대자”로 칭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.
 -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 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 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.
 -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 -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 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

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2. 과업의 효력

-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-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-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 -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 -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 -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-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-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 -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

나. 착수보고 지침

1. 착수보고 지침

-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·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.
-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교육운영 계획을 제시한다.
- 기획 인력 인건비, 공간 설계 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
-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수행환경

-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.
- 본 사업의 서울의 의류 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근로환경의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한다.
-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·진행한다.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협상서,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-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,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.
-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다. 기타

- 본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
-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,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·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